칸트의 因果律

朴 彩 玉
〈全 北 大〉

目 次

Ⅰ. 머리말
Ⅱ. 豫備的 考察
1. 悟性의 原則들
2. 經驗의 類推에 관하여
1) 類推의 意味
2) 類推의 種類
Ⅲ. 因果性의 原則에 대한 論證
1. 因果性의 原則과 그 證明
2. 칸트의 論證에 대한 두 가지 立場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철학적인 의미에서 因果律을 전제로 한다. 칸트철학에 있어서 因果律의 문제는 그의 理論哲學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칸트의 철학체계에서 본다면, 自由論과 더불어 必然의 세계를 인정하는 兩立可能性의 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칸트는 당시의 自然科學이 성립할 수 있는 可能性을 定礎하기 위한 지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흄의 因果律에 대한 分析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흄은 因果律을 우리의 習慣에 의한 主觀的인 信念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必然性이 아닌 蓋然性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自然科學의 成立可能性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懷疑論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칸트는 認識의 客觀的 必然性을 확보하기 위해 카테고리의 演繹論에서 구체적인 論證을 시도하고 있다.

칸트는 흄이 因果律의 分析을 통해 懷疑論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을, 흄이 因果律에 대한 觀念의 기원인 印象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였다. 칸트는 흄과는 달리, 因果律의 原則에 의해서만 可能한 經驗이 성립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思考法은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를 드러내주고 있다.

칸트는 因果律의 原則을 「純粹理性批判」의 第二類推論에서 상론하고 있다. 우리는 제 2 장의 예비적 고찰을 통해, 因果律의 原則을 포함한 〈原則의 分析論〉 중 悟性의 原則 특히 數學的 原則들과 經驗의 類推 일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 3 장에서는 因果律의 原則을 다루면서 칸트가 행한 證明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흄의 견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칸트가 행한 因果性의 原則이 그 당시의 古典物理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限界論에 대해, 최근의 하이젠베르크(W. Heisenberg)의 不確定性의 原理[1] 에도 그 根據를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서 그의 論證이 循環的이라는 批判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맺음말로 가름하고자 한다.

Ⅱ. 豫備的 考察

1. 悟性의 原則들

悟性의 原則들은 經驗의 조건으로 판명될 때 그 證明이 가능하다. 칸트는

---

1) 量子力學에서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W. Heisenberg가 도입한 이론이다.
量子力學에서의 粒子는 粒子로서의 성질과 波動으로서의 性質을 가지는 二重性을 지닌다. 古典力學에 의하면, 電子의 위치와 운동량은 電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늘 동시측정이 가능하여, 그 物理量의 측정치가 不確定하다는 것은 측정기술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量子力學에서는 가령 粒子의 위치 x와 운동량 p는 동시에 確定된 값을 가질 수 없고, 쌍방의 不確定性 Δx와 Δp가 $\Delta x \Delta p \geq h/2\pi$ (h는 플랑크상수)에 의해 서로 제약되어 粒子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면 운동량이 확정되지 않고,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하면 위치가 불확정해진다.
따라서, 量子力學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측정치를 제약하는 이른바 상보적인 物理量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量子力學은 상보적으로 성립된 이론이며, 古典力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태개념의 규정과 그 시간적인 변화의 법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거의 自明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2] 따라서, 이러한 原則들은 認識의 원천으로서의 感覺, 構想力, 悟性에 의해 작용될 때 경험의 조건으로 드러난다. 곧 오성의 원칙을 증명[3] 하는 일은 '判斷'에 관계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原則들은 오성의 적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된다. 우선 '경험적인 원칙들'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경험적 원칙은 개별적인 특수한 경험으로부터 일반화에 의해 도출되기 때문이다. 개념에 의한 必然性이야말로 오성의 원칙이 가지는 표준이므로, 비록 그러한 一般化가 보편적일지라도 必然性은 가질 수 없다.

또한 感性의 原則도 포함되지 않는다. 感性의 원칙은 범주의 적용과 관계없는 直觀의 形式에만 관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數學의 여러 原則들도 우리의 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數學의 原則들은 直觀에서 槪念으로 나아가지, 槪念으로부터 直觀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數學의 原則들이 지니는 客觀的 妥當性이나 可能性은 오성의 原則들에 근거한다.[5]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오성의 원칙들은 直觀의 公理, 知覺의 豫料, 經驗의 類推, 經驗的 思惟一般의 要請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각각 量, 質, 關係, 樣相의 범주와 一致한다.[6] 量과 質에 대한 범주는 直觀의 대상에 관계하는 반면에, 關係와 樣相의 범주는 이러한 대상들이 범주와 관련하여 어떻게 現存[7] 하는가를 다룬다. 칸트는 양과 질의 범주에 따른 원칙을 數學的

---

2) I.Kant ;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 Felix Meiner, 1956) S.B.188 참조. 이하 K.d.r.V. 로 약칭할 것이다.

3) *Ibid.*
증명은 "對象一般의 認識에 대한 主觀的인 원천으로 부터 유래한다."

4) 數學과 같은 形式科學의 一般的인 구조를 본다면, 한 개념을 定義하기 위해서는 無定義槪念 (undefined notions) 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해준다. 特히 peano의 公理體系를 참조할 것.

5) I.Kant ; *op.cit.*, S.B. 189, 199.
물론 數學과 관계하는 오성의 원칙은 直觀의 公理와 知覺의 豫料이다.

6) *Ibid.*, S.B. 200.

7) 칸트가 '對象의 現存'이라고 칭할 때, 이는 時間 안에서의 위치를 말한다.

原則이라 부르고, 이에는 公理와 豫料가 屬하며, 관계와 양상에는 力學的 原則으로 類推와 要請이 속한다고 간주한다.[8]

하지만 悟性의 原則들을 證明하는 일은 數學的 證明들과는 달리 直觀的이지 않고, 槪念的이거나 論證的이어야만 한다.[9]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數學的 原則들은 直觀的 確實性을 지니며, 반면에 力學的 原則들은 단지 論證的 確實性을 가진다고 주장한다.[10] 또한 數學的 原則은 同種的인 것의 綜合으로 外包量과 內包量의 綜合에 關係한다. 이에 비해서 力學的 原則은 異種的인 것의 綜合으로 實體와 偶有性, 原因과 結果에 關係한다. 그러나 數學的 原則이 곧 數學의 原則이며, 力學的 原則이 (物理)力學의 原則은 아니다.[11] 왜냐하면, 오성의 모든 원칙들은 外感의 대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幾何學이나 力學의 原則들처럼 制限的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悟性의 原則을 證明하는 일은 무엇인가?

數學的 證明과 같이 直觀的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證明은 항상 槪念을 사용하는 論證的인 形式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悟性의 原則들은 槪念을 단지 分析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없는 先天的 綜合判斷이다. 따라서, 이러한 原則들은 槪念으로부터 直接的으로 증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단지 獨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2] 그러므로 悟性의 原則들은 可能한 經驗이 전제될 때에만 確實하다고 볼 수 있다.[13] 悟性의 原

---

8) I.Kant ; *op.cit.*, S.B. 201.
이는 마치 칸트가 二律背反論에서 제 1,2 이율배반을 數學的 二律背反이라 칭하고, 제 3,4 二律背反을 力學的 二律背反이라고 부르는 것과 흡사하다. 二律背反에도 각각 양, 질, 관계, 양상의 범주가 관련된다.

9) *Ibid.*, S.B. 223.

10) *Ibid.*, S.B. 201.

11) H.J.Paton ;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Vol.2. (New York : Humanities Press Inc., 1970), p.99.
그러나 칸트는 직관적 확실성은 數學에 적용되고, 哲學的 確實性은 항상 論證的이라고 주장한다 (I.Kant ; Logik, Einleitung. Ⅲ과 Ⅸ 참조).

12) I.Kant ; K.d.r.V., S.B. 764.
칸트가 '獨斷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개념을 物自體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13) *Ibid.*, S.B. 764~5.

則이 槪念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고, 가능한 경험을 전제함으로써 성립됨에도 '原則'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原則은 그 자신의 證明根據인 經驗自體를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經驗自體에서 原則이 항상 前提되기 때문이다.[14]

칸트는 原則의 證明을 통해, 對象의 經驗을 위해서는

(1) 感性的 直觀이 時間과 空間이라는 形式 아래 주어져야만 하고,

(2) 하나의 時間·空間에 이러한 感性的 直觀의 綜合이 있어야 하며,

(3) 判斷이 있어야만 한다[15] 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2. 經驗의 類推에 關하여

1) 類推의 意味

公理와 豫料에 하나의 原則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類推에도 단 하나의 原則이 있다. 類推의 原則은 제 2 판에서 "經驗은 知覺의 必然的인 結合의 表象을 통해서만 可能하다"[16] 고 표현된다. 이러한 필연적인 결합은 實體와 偶有性 및 因果性의 관계를 포함한다.

오성의 원칙들은 경험의 조건임이 드러날 때 證明된다. 제 2 판에서 공식화된 類推의 一般的인 原則은 이러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經驗의 조건인 必然的인 結合이 時間 안에서 성립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제 1 판에서 "모든 現象은 그 現存에 관해 時間에서 규정된

---

14)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범주의 연역론과 더불어 循環論證이라는 批判을 받는다. 예컨대, 이같은 論法으로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因果律을 항상 가정하기 때문에, 因果律은 경험의 必然的인 조건이라면, 因果律이 경험의 필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에서 因果律을 正當化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순환논증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칸트 자신이 언급한 바 있는 '實驗的 方法'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15) H. J. Paton ; *op. cit.*, p.105.
I. Kant ; K.d.r.V., S.B. 197 참조.

16) I. Kant ; K.d.r.V., S.B. 218.
여기에서의 知覺(Wahrnehmung)은 現象(Erscheinung)과 同意語로 쓰이고 있다(B.160을 참고할 것).

相互關係의 先天的인 法則에 따른다"[17] 는 공식으로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類推에서의 칸트의 주요한 관심이 物理的 對象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類推의 原則은 空間을 취급하지 않았다.

類推의 原則을 통한 칸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時間 그 自體는 知覺될 수 없지만, 時間 안에서의 對象의 위치는 단지 時間一般에서의 그 對象들의 結合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즉 對象이 存在하게 된 時間은 그 對象이 다른 對象보다 앞서거나 계기하는 관계에서만 규정된다.

둘째로, 時間에서 對象의 結合을 통하여 對象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先天的으로 對象을 연결하는 槪念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知覺自體가 對象의 時間的인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거나, 絕對時間 自體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時間 안에서 客觀的 관계의 경험을 경험적 직관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경험적 직관에서 도출되지 않는 槪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槪念들은 經驗과는 독립하여 先天的으로 對象을 結合할 수 있게 된다.

세째, 先天的으로 對象을 結合하는 槪念은 必然性을 포함한다. 따라서 經驗은 단지 現象을 必然的으로 結合시키는 槪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은 客觀性이 必然性을 포함하고 있다는 범주의 先驗的 演繹論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밝힌 經驗의 類推와 數學에서의 類推가 모두 關係를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類推의 意味[18] 를 드러내고자 한다.

---

17) *Ibid.*, S.A. 176~7.
물론 여기에서의 先天的인 法則은 類推를 뜻한다.

18) 칸트는 類推를 "完全히 相異한 사물들 사이의 두 가지 관계들이 가지는 完全한 類似性"이라고 밝힌다. I. Kant ;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Hamburg : Felix Meiner, 1974), §58.

數學的 類推는 두 양적 관계(數)의 同等性을 나타내는 公式이다. 우리는 量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 항이 주어진 비례식을 푼다면 곧바로 네번째 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19] 이와는 달리, 經驗의 類推는 두 질적인 關係와 연관된다.[20] 그러나 質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A와 B의 關係에서 B가 죽음이고 B를 야기한 A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즉 어떤 알려진 原因이 그 結果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關係를 B에 대해서 갖는 어떤 A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A가 무엇인지를 類推할 수가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유추의 原則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건들이, 이미 알려진 모든 結果들이 그것의 原因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 同一한 關係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가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類推는 原則에 적용될 수 있다는 意味를 지닌다. 類推는 경험적으로 사용될 때, 그 意味를 갖게 된다. 즉 物自體가 아니라 可能한 經驗의 對象에 적용될 때에만 妥當하다.[21] 이러한 견해는 이미 先驗的 圖式論에서 立論된 것이지만, 類推論의 논의가 한층 복잡하며 정교하다.

2) 類推의 種類

經驗의 類推는 實體의 持續性과 因果性 및 相互作用이라는 세 가지의 原則을 다루고 있다. 이는 關係가 지니는 세 가지의 범주와 상응한다.

(1) 第一類推 : 實體 持續性의 原則

칸트는 이에 대해 "모든 現象은 時間 안에 존재하며, 同時存在와 繼起는 基體로서의(內的 直觀의 지속적인 형식으로서의) 時間 안에서만 表象될 수 있다"[22] 고 말한다. 時間 自體는 결코 知覺될 수 없기 때문에, 知覺의 대상인 現象에는 基體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현상의 근저에는 不變的이며

19) 예컨대, $2:4=3:x$라는 비례식에서 x의 값을 유추에 의해 구할 수 있다.

20) 類推가 질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量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K.d.r.V., S.B. 224에서 實體의 量은 증감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21) I.Kant ; K.d.r.V., S.B. 178, 185.

22) *Ibid.*, S.B. 224.

항상 同一한 實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持續的인 實體가 없다면, 어떠한 時間關係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實體라는 카테고리의 類推에 의해서 時間의 客觀化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칸트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實體槪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칸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범주가 아니라 도식화된 범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칸트는 모든 變化[23] 속에 不變하는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현상적인 自我 속에서는 어떠한 항구적인 요소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범주는 오직 物理的인 對象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實體持續性의 原則을 과학적인 질량보존의 법칙과 동일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24] 어떤 항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선천적으로 알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단지 경험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칸트는 세계 내에서의 實體의 量이 항상 同一하게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先天的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같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同一한 實體가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現象界에 불변하는 實體가 있다는 칸트의 논의는 그의 '觀念論'과 兩立이 不可能하다는 데 難點이 있다. 왜냐하면, 物理的 對象에 대한 항구성을 말하는 것은 實在論者의 立場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서 칸트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명제가 우리에게 인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명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경험되는 명제라고 주장하는 現象主義者(phenomenalist)의 주장과 一致한다.[25]

---

23) 칸트는 變化와 관련하여 Wechseln과 Verändern을 구별한다. 즉, 사물자체가 아니라 사물의 상태만이 Wechseln 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實體의 지속성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캠프 스미스는 Wechseln을 'change'로 해석하고, Verändern을 'alter'로 해석하였다.

24) A.C.Ewing ;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김상봉 옮김, 순수이성비판입문, 한겨레), p.157.

25) *Ibid.*, p.95.

(2) 第二類推 : 因果律에 따르는 時間繼起의 原則

이 제 2유추는 칸트가 獨斷의 선잠으로부터 각성하여 批判哲學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 3 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原則에 대한 칸트의 證明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證明은 우리의 知覺은 항상 繼時的으로 이루어진다는 點이다. 예컨대, 상류에 있는 배(船)의 지각과 하류에 있는 배의 지각은 계시적이며, 家屋의 상부에 대한 지각과 하부에 대한 지각은 계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지각의 가역성과 불가역성으로 구별된다. 즉 상류의 배와 하류의 배에 대한 지각의 순서는 일정하여 이를 역으로 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계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옥의 상부에 대한 지각과 하부의 지각은 일정치가 않다. 이 경우에 우리는 객체의 동시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각의 순서의 불가역성으로부터 사건의 계기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칸트는 사건 그 자체의 계기가 因果律에 의해 일정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고 간주하였다.

둘째 종류는 우리가 現象의 객관적 계기를 인식하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한 그 시간내에 있어서의 위치를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는 시간 자체를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 시간 내에 있는 어떤 일정한 위치를 규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선행사건과 관련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봄으로써, 現象의 客觀的인 계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因果律이 전제될 때, 知覺의 일정한 계기로부터 客觀의 계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先行하는 現象이 그에 계기하는 現象을 규정한다는 의미로 因果律을 생각했을 때, 모든 계기하는 사건을 原因과 結果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갖게 된다.[26] 예컨대, 쇼펜하우어의 칸트비판은 이를 반영한다. "칸트에 따른다면, 모든 객관적인 계기는 因果關係이므로,

---

26) 韓端錫 ; 칸트哲學思想의 理解(서울, 養營閣, 1983), p.163.

그렇다면 낮과 밤도 因果關係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과연 낮이 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音樂을 들을 때, 처음에 들은 音은 나중에 들은 音과 因果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성립할 수 있는가"[27]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칸트비판은 결코 칸트의 眞意를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칸트는 모든 계기하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기하는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에 의한 필연적인 제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28]

(3) 第三類推 : 相互作用 또는 相互性의 法則에 따르는 同時存在의 原則

칸트는 제 3 유추를 통해, 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고립적인 것이 없고, 相互간에 關係하고 있으며, 거기에 統一的인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類推는 두번 째 類推와 더불어 모두 일상적인 의미의 因果律에 포함될 수 있다. 두 類推의 차이는 둘째 유추가 一方的인 (one-sided) 因果性인 데 비해, 세째 유추는 相互的인 (two-sided) 因果性 즉 實體 A가 實體 B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시 B가 A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칸트가 相互性이라고 말할 때, 相互作用하는 사물들 각각의 현재상태가 상대편의 現在가 아니라 바로 이전 상태로부터 因果的으로 야기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바로 다음의 상태를 因果的으로 야기시키는 경우이다. 相互性의 범주가 모든 物理的 現象에 적용된다면, 직접적인 因果性 뿐만 아니라, 天體와 우리 자신사이의 관계와 같은 간접적인 관계도 포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全體로서의 因果的인 체계를 전제로 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相互作用의 原則에 대한 칸트의 證明은 知覺의 繼時性과 知覺된 對象의 共存性으로 要約할 수 있다. 知覺의 繼時性은 이미 두 類推에서 전제된 것

27) A. Schopenhauer ; Über die vielfache Wurzel des Satzes vom Zureichenden Gründe, §23. Werke hrsg. von Deussen, Bd.3, S.196.
28) 韓端錫 ; *op.cit.*, p.163.

이었으며, 對象의 共存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知覺의 可逆性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共存한다고 생각되는 實體는 서로 相互作用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칸트는 다른 實體가 시간상에서 취하는 위치를 규정한다는 것은 오직 實體를 규정하는 原因으로 보고, 두 대상이 시간 중에 共存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으려면 한 쪽은 다른 쪽의 原因이며, 또 다른 편은 다른 한 편의 原因이라는 相互作用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모든 實體는 그것이 空間에서 동시적인 것으로 知覺될 수 있는 한, 完全한 相互作用의 關係 속에 있다"[29] 는 原則이 證明된다. 이 原則이 因果律의 原則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할 것도 없다.

Ⅲ. 因果性의 原則에 대한 論證

1. 因果性의 原則과 그 證明

경험의 제 2 유추를 통하여 칸트는 因果律에 따른 時間繼起의 原則을 다루고 있다. 이 因果律의 原則은 칸트의 原則論 중에서 가장 난해하며,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原則의 證明은 많은 칸트 硏究家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30]

第二類推는 2 판에서 "모든 變化는 原因과 結果의 結合에 따라 일어난다"[31] 고 公式化된다. 이러한 因果律의 原則은 비록 현대의 物理學에 의해 그 普遍性이 의문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科學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전제로 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因果律

---

29) I. Kant ; K.d.r.V., S.B. 258.

30) H. J. Paton ; *op.cit.*, p.224.
N.K. Smith ; A Commentary to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2nd ed.,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1979), p.363.

31) I. Kant ; K.d.r.V., S.B. 232.
이를 칸트는 제 1 판에서 (A. 189) "生起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規則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무엇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生起하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을 뜻한다.

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를 빼앗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칸트의 論證이 난해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논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는 現象界에서의 事件의 客觀的인 繼起와 우리의 主觀的인 觀念을 구분하고, 전자의 계기는 因果律에 의해 必然的으로 규정된다고 보았다.[32] 이러한 견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칸트의 因果律의 原則에 대한 證明[33]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첫번 째 證明

이 증명에서 칸트는 現象의 계기는 영원한 實體 즉 계시적인 존재에 대한 변화임을 드러내고자 한다.[34] 이에 대한 칸트의 證明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동일한 사물을 다른 時間에 여러 상태로 지각한다. 따라서, 시간 안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각[35]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
> ② 연결은 대상의 인식을 위한 일종의 必然的인 綜合이다. 이러한 綜合은 단순히 감각이나 직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內感을 時間關係로 규정하는 構想力의 綜合的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
> ③ 構想力은 現象을 A이후에 B라든가 B다음에 A와 같은 방식

---

32) H. J. Paton ; *op.cit.*, p.222.

33) 因果性에 대한 칸트의 證明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페이톤과 스미스는 주장한다. 페이톤에 따르면, (1) B. 232-4 (2) B.234-9 (3) B.239-40 (4) B.241-4 (5) B.244-6 (6) B.246-7 으로 구분한다.(H. J. Paton ; *op.cit.*, p.224) 이에 대해 브로드는 앞의 세 증명은 결국 동일한 것이며, 다섯 째와 여섯번 째는 유사하고, 네 째 증명만이 특수하다고 한다.(C. D. Broad ; Kant-An Introduction-,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165)
그러나 웰던은 여러가지의 증명이 결국은 B.244-7에서만 행해지고, 나머지는 이 증명에 대한 보조설명이라고 강조한다.(T. D. Weldon ;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p.312) 이러한 웰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先驗的 證明이란 각각의 선험적인 명제에 대해 단 하나의 증명만을 찾을 수 있다" (B.815)는 칸트의 뒷받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흄은 現象의 계기에 대한 의식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칸트는 영원한 實體에 대한 계시적인 상태를 正當化할 수 있다고 본다.

35) 이때의 지각은 현상과 동의어이다.

으로 結合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知覺만으로는 계시적인 현상에 대한 客觀的인 時間關係를 규정할 수 없다. 이와같은 칸트의 주장은 類推論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설명되는 時間自體는 知覺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만일 시간자체가 지각될 수 있다면, 대상자체에서 현상의 순서를 시간과 관련시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규정은 거의 경험적인 知覺이어야만 한다. 예컨대, 시저의 죽음은 B. C. 44年이라는 특정 순간의 관념을 형성하는 知覺에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36]

④ 만일 우리가 時間 안에서 現象의 客觀的인 關係[37]를 알려면, 實體의 계시적 상태 즉 現象의 時間的 關係를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必然的인 것으로 규정된 時間的 繼起란 因果律에 따라 규정된 계기이기 때문이다.

⑤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유나 개념은 必然的인 綜合的 統一에 대한 槪念[38]으로, 오성의 순수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순수개념이 다름아닌 因果關係에 대한 개념[39]이다.

⑥ 그러므로, 우리는 現象의 계기가 經驗을 가능하도록 하는 因果律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에 있어서는 經驗可能性의 조건이 現象的인[40] 對象可能性의 조건이기 때문에, 경험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因果律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첫번 째 論證을 통해 칸트는 '現象'이라는 용어를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

---

36) H. J. Paton ; *op. cit.*, p.228.

37) I. Kant ; K.d.r.V., S.B. 234.
칸트가 '만일 우리가 규정된 것으로서 現象의 客觀的인 關係를 알려면'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現象을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유가 없는 지각에 있어서는 이같은 客觀的인 關係가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규정될 수'라는 말도 必然的으로 규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38) 이는 그 계기가 객관적인 계기를 나타내는 현상의 필연적인 통일로써, 특별한 종류의 필연적인 종합적 통일에 대한 개념이다.

39) 칸트는 모든 必然的인 객관적 계기를 인과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행사건이 필연적으로 나중의 사건에 대한 原因이라고는 간주하지 않는다. 예컨대, 밤은 낮의 原因이 아닌 것과 같다.

40)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만일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物自體라면, 이에는 因果律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는 것 같다. 즉 제 2 판에서는 '對象에서 서로 계기하는 實體의 상태'[41]를 뜻하며, 제 1 판을 통해서는 한 집(家屋)의 예와 같이 전 대상에 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2]

(2) 두번 째 證明

여기에서는 첫번 째 證明을 통해 드러난 客觀的인 繼起에 대해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는 데 있다.

> ① 客觀的인 사건이나 변화는 그 이전에 어떤 것을 직접 知覺하지 않고서는 知覺될 수 없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허한 시간자체만을 知覺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 ② 칸트는 客觀的인 繼起와 主觀的인 繼起를 서로 구별할 必要가 있음을 밝힌다. 가령, 家屋과,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양자의 지각은 모두 계시적이다. 家屋의 경우 그 知覺은 지붕의 위에서 밑으로도, 이와 반대로 밑에서 위로도, 또 좌우 어디서도 가능하다. 즉 그 知覺은 可逆的이다. 따라서 그 知覺의 순서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배의 경우에 그 知覺은 不可逆的이고, 이때 각지에 있어서 知覺의 계기의 순서는 한정되어 있으며, 覺知는 그 순서에 구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不可逆的인 現象의 知覺에는 계기적으로 생기는 지각의 순서를 필연적이게 하는 規則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칸트는 客觀的 繼起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知覺은 일정한 순서를 지닐 수 있다고 여긴 것 같다.
>
> ③ 우리는 覺知에서 現象에 대한 主觀的인 繼起는 客觀的인 繼起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된다.[43] 만일 주관적인 계기가 객관적인 계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구물이며 규정될 수도 없다. 요컨대, 그런 경우 對象에 대한 多樣의 時間的인 連結에 관해 아무 것도 증명할 수가 없게 된다.
>
> ④ 現象의 객관적 계기는 하나의 法則에 따르는 現象의 다양에 대한 順序에 있다. 여기에서의 法則은 분명히 覺知의 法則을 말한다.

---

41) I.Kant ; K.d.r.V., S.B. 233.

42) *Ibid*., S.A. 190.
A.192에서는 움직이는 배(船)를 의미하기도 한다.

43) 여기에서의 現象은 現象界에서의 事件이나 變化를 말한다.

(3) 세번 째 證明

세번 째 證明은 보통 간접증명[44]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선 증명에 대한 보조설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칸트는 먼저 앞서 증명되었던 논증이 거짓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만일 知覺된 사건이 규칙에 따라 계기하는 어떤 것에 의해 앞서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에 知覺의 모든 계기는 단지 主觀的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對象과도 관계가 없는 관념의 단순한 유희만을 가지게 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知覺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간관계를 다른 현상으로부터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

現象에서 우리의 각지에 대한 계기를 필연적인 계기로 만드는 어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계기를 말할 수 없다. 이는 現象에서의 계기 그 자체가 필연적인 계기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여기에서 對象이란 단지 現象이지 결코 物自體가 아니라고 본다.

세번 째 증명을 통해 칸트는 "우리가 客觀的인 事件을 경험할 때, 規則에 따라 도출되는 先行하는 무엇을 항상 전제한다"[45] 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전제가 없이는 객관적인 세계에서의 계기를 말할 수 없고, 단지 우리의 각지에서의 계기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論證을 통해 드러나는 주요한 난점들 가운데 하나는, 칸트가 단지 하나의 계기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반면에 두 개의 계기가 있는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사건의 계기는 우리의 지각의 계기보다도 훨씬 넓은 편이다. 또한 우리는 내 각지에서의 계기가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이어서 객관적일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할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칸트는 색깔, 모양, 크기등은 공간에서의 영원한

---

44) 모든 비판적 증명이 어떤 의미로는 간접적이다. 오성의 원칙들은 개념으로부터 직접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가능한 경험과 관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세번 째 증명을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면,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45) I.Kant ; K.d.r.V., S.B. 240.

實體의 상태[46]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知覺이 必然的인 계기안에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배(船)의 위치에 대해 반대의 순서를 취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 쉽게 이해된다. 여기에서 칸트는 因果性의 개념이 類似한 사건의 반복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주장[47]에 대해 언급한다.

(4) 네번 째 證明

그는 네번 째 證明을 '對象'의 意味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觀念은 단지 개별적인 時間順序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變樣이다. 대상에 대한 觀念의 關係는 특별한 必然的 結合을 통해서 가능하며, 따라서 하나의 法則이나 規則에 따른다.

우리의 覺知는 항상 계시적이기 때문에, 覺知에서의 계기는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고, 時間關係 중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그 선행상태 중에 규칙적으로 계기할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客觀的 事件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時間 안에서 하나의 규정된 위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칸트는 더 나아가 한 事件은 규칙에 따라 선행하는 상태가 있다고 전제됨으로써, 時間 안에서 客觀的이고 일정한 위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客觀的 繼起는 必然的 繼起이어야 하며, 規則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칸트는 이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제시한다. 즉 첫째로 우리는 系列을 역전시킬 수는 없으며, 즉 전도된 순서로 事件을 선행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고, 둘째로, 선행상태가 조정되면 이 특정한 사건이 必然的으로 계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48] 그리하여 우리의 표상들 사이에 하나의 順序가 형성되며, 이 순서에서 현재의 상태는 그 어떤 선행상태를 지시하게 된다.

---

46) *Ibid.*, S.B. 232~3 참조.

47) *Ibid.*, S.B. 240~1.
이러한 견해는 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흄의 입장이 因果性의 개념을 경험으로부터 도출했기 때문에 칸트의 견해와 다른 것이 아니라, 因果性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客觀的인 事件에 대한 知覺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48) *Ibid.*, S.B. 243~4 참조.
여기에서 '조정'이라는 용어는 現存을 뜻한다. 왜냐하면, 칸트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이 時間 안에서 하나의 위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증명은 실제로 앞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客觀的인 繼起가 必然的 繼起여야만 한다는 것은 이미 두번째 증명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우리의 관념이 계시적으로 知覺되는 한 主觀的인 계기로 간주되며, 사고에 의해 위치가 주어질 때 객관적 계기로 간주된다고 해도 이 과정은 모두 하나의 동종의 時間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칸트가 事件을 知覺한다고 말할 때, 그가 의도하는 繼起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5) 다섯번 째 證明

다섯번 째 증명은 주로 경험에서 時間의 必然的인 계기를 재현하려면, 現象에 必然的인 繼起가 있어야만 된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는 A. 183 (B. 226)에서, 하나의 時間의 統一性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現象의 영원한 기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이 증명은 지속적인 實體에 대한 논증과 유사하며, 時間 自體는 知覺될 수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물론 이점은 因果性의 原則에 대한 모든 증명에 적용된다. 선행의 시간을 통하지 않고는 후속의 시간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선행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나중의 시간을 규정한다. 이점은 칸트에 의해 感性의 必然的인 法則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時間은 우리 感性의 形式이기 때문이다. 또한 時間系列의 경험적 지식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法則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時間系列에서는 과거 시간의 현상이 후속 시간의 모든 현상을 규정하고, 사건으로서의 후속 현상은 그 현존이 앞선 사건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일어난다. 이러한 논증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는 현상과 관계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의 계열에서 이같은 共存性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칸트는 또 다시 그러한 경험적 인식에는 悟性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經驗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悟性이다. 왜냐하면, 悟性이 없다면, 우리는 對象을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여섯번 째 證明

여섯번 째 증명은 하나의 증명이라기 보다는 앞선 증명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이라 할 수 있다.

① 모든 경험적 인식에는 構想力에 의한 다양의 綜合이 있으며, 이러한 종합은 항상 계시적이다. 즉 우리의 표상은(그 內容이 계기적이든 공존하든지) 항상 계시적이다.

② 표상의 계기는 구상력에서 규정된 順序를 가질 수 없다. 즉 하나의 표상이 앞서야 하고, 다른 표상은 후속하여야 된다는 점은 必然的이지 않다. 우리가 구상력을 경험적 인식을 위해 현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표상의 계기는 그 主觀的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그 안에서 必然性을 확보할 수 없다.

③ 만일 綜合이 覺知의 綜合(즉 주어진 現象의 多樣에 대한 綜合)이라면, 그 順序는 대상에서 규정된다. 여기에서 칸트는 각지된 경우를 하나의 事件으로 간주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對象은 表象이 각지된 순서를 규정한다. 칸트가 '각지'를 말하는 것은 대상을 규정하는 계시적인 종합의 순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④ 내 知覺[49]이 客觀的인 事件에 대한 認識을 포함하려면 경험적인 판단으로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계기가 규정된다는 것을, 즉 事件은 규칙에 따라 다른 現象을 時間 안에서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된다.

⑤ 만일 앞선 사건을 정위하고, 나중의 사건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구상력의 단순한 주관적 역할로 간주될 것이다.

⑥ 따라서, 因果關係는 우리의 經驗的인 判斷을 위한 客觀的 妥當性의 條件이다. 즉 이러한 判斷의 經驗的 認識에 대한 조건이자 경험의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⑦ 그러므로 경험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기나 변화는 因果律에 의해 규정된다.[50]

칸트는 證明을 요약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51] 왜냐하

---

49) 칸트에 있어서 知覺(wahrnehmung)과 覺知(apprehension)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때로는 同一視되기도 한다.

50) 이는 경험의 필연적인 조건이 경험의 대상에 대한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A.111, A.158, B.197의 언급을 뒷받침한다.

51) H. J. Paton ; *op. cit.*, p.261.

면, 그는 絶對時間이 知覺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時間의 本性을 논한 다섯번 째 證明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칸트의 論證에 대한 두 가지 立場

「純粹理性批判」에서 經驗의 제 2 유추에 대한 論證은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이 論證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논증과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구구하다. 예컨대 유잉(A.C.Ewing), 벡크(L.W.Beck), 드레이어(D.P.Dryer) 등은 칸트의 옹호자이며, 스트로슨(P.F.Strawson)은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第 2 類推를 통해 칸트는 단적으로 모든 事件은 原因을 가져야만 된다는 점을 證明하고자 했다. 그는 이를 因果律의 原則으로 간주했다. 因果律의 原則은 이미 흄에게서 그 分析을 찾아볼 수 있다. 흄은 因果律의 原則을 우리가 승인하게 된 것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信念이나 習慣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였다. 칸트는 흄의 이러한 결론이 科學과 學的 認識에 치명상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흄과는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 즉 흄이 논의하지 않았던 因果律의 原則에 대한 綜合的이면서도 先天的일 수 있는 可能性을 정초하고자 했다.

綜合的인 命題가 先天的으로 알려질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는 일은 「純粹理性批判」의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원칙은 先驗的인 證明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方法論〉에서 "證明은 經驗 그 자체가, 따라서 經驗의 對象이 그러한 연결이 없으면 不可能하다는 점을 명시한다"[52] 고 밝힌다. 그러나 칸트의 논증형식 자체는 반드시 先驗的인 논증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가 論證을 통해 내린 結論을 命題化한다면 다음과 같다.[53]

---

52) I.Kant ; K.d.r.V., S.B. 811.

53) J.V.Cleve ; Four Recent Interpretations of Kant's Second Analogy, Kant-Studien, Bd.64 (1973), S.72.

經驗되는 어떤 事件에 대한 必然的인 條件은 그 事件이 하나의 原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證明했다고 해서, '經驗되는 어떤 事件에 대한 必然的인 條件은 모든 事件이 하나의 原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證明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과거, 현재, 미래)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면, 原因이 없는 事件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原因을 갖지 않은 어떠한 事件도 우리의 經驗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第2類推論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인'과 '사건'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가 原因이 되기 위해서는 "A는 그와 다른 B가 A에게서 必然的이고 절대적으로 普遍的인 法則에 따라서 도출되지 않으면 안된다."[54] A로부터 B가 도출된다는 것은 적어도 B의 現存이 A의 現存보다 시간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法則에 따라서'라는 것은 '항상 A와 같은 류의 사건이 발생하면, B와 같은 류의 사건이 뒤따른다'는 形式的인 法則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와같은 原因의 개념은 어느 정도 흄의 견해와 비슷하다. 칸트와 흄은 x가 y보다 시간상 앞서고, x와 유사한 사건이 y와 유사한 사건을 도출한다면, 그때 x는 y의 原因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칸트는 한 사건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끌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흄은 원인과 결과간의 연결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칸트는 바로 因果律의 必然性에 대한 주관적인 설명을 거부한다.

또 다른 주요개념으로 '事件'을 들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事件이란 대상의 단일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순서를 지닌 일련의 상태라는 2중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어떤 상태로 된다"[55]는 의미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주전자의 물이 끓게 되는 것

54) I.Kant ; K.d.r.V., S.B.124.
55) *Ibid.*, S.B.236.

과 시저의 죽음은 모두 사건이다. 그런데 무엇이 어떤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한 시간(시점)이 필요하다. 즉 S라는 한 상태는 이 상태를 포함하지 않은 현상이 선행하지 않고서는 경험적으로 지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공허한 시간은 가능한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56]

第2類推의 因果性의 原則에 대한 칸트의 논증을 재구성한 유잉의 견해[57]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칸트의 논증을 주관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한 유잉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58]

(a) 모든 각지는 계시적이다.

(b) 모든 현상은 재현(지각)이다.

(c) 한 사건에 대한 모든 각지는 지각의 계기이다.

(d) (c)의 逆은 거짓이다. 즉 지각의 모든 계기가 없다면 한 사건의 각지도 없다.

(e) 만일 α와 β가 한 사건에 대한 지각의 구성요소라면, α와 β의 순서는 필연적이다.

(f) α와 β의 순서가 필연적이라면, α와 β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g) 따라서, α와 β가 한 사건에 대한 지각의 구성요소라면, α와 β는(e와 f로부터)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유잉의 견해에 대해, 클레베는 주관주의(subjectivism)가 참이라면, 유잉이 제시한 전제 (d)는 거짓이라고 논박한다.[59]

또한 벡크는 어느 정도 실재론자의 해석을 취하지만, 칸트의 논증을 現象主義者(phenomenalist)의 입장으로 재구성하였다. 벡크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60]

---

56) *Ibid.*, S.B. 237.

57) 칸트의 제2유추에 대한 유잉의 논의는 'Kant's Treatment of Causality'에 근거한다.

58) J.V.Cleve ; *op.cit.*, SS. 76~7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e)의 α와 β는 사물의 상태 A와 B에 대한 각각의 지각을 뜻한다.

59) *Ibid.*, S.77.

60) *Ibid.*, SS.79~80 재인용.
벡크가 구성한 결론 (f)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B.240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a) 우리는 α-β간의 표상의 계열이 한 사건 즉 A-B 상태의 계열에 대한 증거로 결정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α는 β이후에는 발생할 수 없다고 확신할 때에만 그렇다.

(b) 만일 α가 β이후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B는 A이전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c) B가 A이전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 α-β의 표상의 계열은 A-B상태의 계열에 대한 증거로 결정할 수 있다(전제 a와 b로부터).

(d) 상태 B가 상태 A이전에 발생할 수 없다면, A는 B의 원인이다.

(e) A가 B의 원인임을 확신할 때에만 α-β간의 표상의 계열은 A-B상태의 계열에 대한 증거로 결정할 수 있다(전제 c와 d로부터).

(f) 발생하는 어떤 것을 경험하려면, 그 계기에 대한 현상이 앞선 상태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벡크의 주장에 대해, 클레베는 결론 (f)가 애매하다고 논평한다.[61] 그러나 유잉과 벡크의 재구성을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에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잉과 백크의 견해와는 달리, 스트로슨은 칸트의 논증을 實在論의 입장으로 해석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먼저 순서의 무차별성(order-indifference)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第2類推論을 分析한다. 계기적으로 발생하는 두 지각 α와 β는 서로 반대 순서로 발생한다면, 그 순서는 무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지각이 순서의 무차별성을 결여한다면, 그 순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불가역적인 순서는 스트로슨에 따르면 필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두 지각 α와 β가 한 사건에 대한 지각일 때, α와 β는 因果的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주장된다.

우리가 한 事件을 因果的으로 知覺할 때, 칸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논

61) *Ibid.*, S.80.

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스트로슨은 설명한다.[62]

> ① 만일 知覺 α와 β의 계기가 A에서 B에로의 客觀的 變化 (즉 한 事件)에 대한 知覺이라면, 우리의 知覺의 순서는 必然的 순서이다.
>
> ② 우리의 지각의 순서가 必然的 순서라면, 또한 A-B系列의 순서는 必然的 즉 因果的이다.
>
> ③ 만일 우리의 지각의 계기가 A에서 B에로의 객관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라면, A-B系列의 순서는 必然的이다. 즉 因果的이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우리는 한 事件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事件이 하나의 原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로슨은 이러한 칸트의 논증이 두 가지 면에서 誤謬를 범했다고 논평한다. 즉 '必然的'이라는 의미가 ①에서는 概念的(즉 論理的) 必然性이며, ②는 因果的 必然性을 나타내고 있어 그 차이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과 ②의 서로 다른 차원의 전제로부터 ③으로 추론하는 것은 모호하다고 평가한다.[63] 또한, '必然的'이라는 용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칸트의 논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즉 칸트는 α-β의 지각의 계열이 必然的이라는 사실로부터 A-B상태의 계열이 똑같이 必然的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Ⅳ. 맺 음 말

칸트는 「純粹理性批判」의 〈原則의 分析論〉에서 數學과 物理學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를 밝히고자 했다.[64] 그는 先天的인 數學的 사유방식을 物理

---

62) *Ibid.*, SS. 81~82.

63) 그러나 클레베는 이러한 스트로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힌다. J.V.Cleve ; *op.cit.*, S.82 참조.

64) 이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原則들은 그의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自然科學의 形而上學的 原理)에서 다루고 있다.

的 對象이라는 實在的인 世界에 적용하는 문제를 정당화하고자 했으며, 自然의 齊一性(uniformity)이라는 原理를 확립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지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因果性에 대한 原則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수립하고자 했던 문제와 그 해결방안들은 그의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限界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칸트가 제시했던 實體와 심지어 因果의 범주까지도 現代科學 특히 하이젠베르크의 量子力學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因果의 범주는 그대로 폐기처분할 수 없다는 단서를 제시하고 싶다. 왜냐하면, 物理學은 인간의 경험 전체와 同一視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영원한 철학적 진리로서 더 이상의 탐구가 없을지라도 액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고안품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가 오늘의 우리 시대를 연구대상의 史實로 뒤돌아 본다면,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일지라도 계속 진부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아마도 더욱 逆說的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칸트의 因果의 原則論이 뉴튼의 古典 物理學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科學의 발전에서 볼 때, 近代 物理學은 미시세계에서의 因果律을 부정하는 現代의 不確定性의 原理에 의해 극복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우리는 칸트의 論證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칸트의 經驗의 類推는 不確定性 자체를 存立시키기 위해서도 必要하다"[65] 는 벡크(L.W.Beck)의 주장에 유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不確定性의 原理가 미시적 현상에만 적용되고 統計的인 原理로 성립된다고 할지라도, 그 現象을 인식하려면 因果關係를 우리의 사고에서 實驗的으로 전제하고 이를 비교하여 비록 統計的으로라도 현상의 공통된 法則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因果律을 전적으로 부정해 버린다면,모

65) L.W.Beck ; The Second Analogy and the Principle of Indeterminacy, Kant-Studien, Bd.57 (1966), S.200.

든 現象은 일회적일 뿐, 거기에서는 어떠한 統計的 眞理조차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칸트의 因果律의 原則은 현대에 폐기되어야 하는 증기 기관차가 아니라, 오히려 不確定性의 原理와 양립될 수 있는, 새로운 전동차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벡크는 "不確定性의 지식을 因果的인 決定性에 관한 지식에 기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충분한 認識論的 根據가 있다고 본다. 第2類推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中位의 크기의 대상이 지니는 因果的인 決定性이 없이는 현미경적인 대상 사이의 非因果的인 關係를 위한 논거를 우리는 원래 어떻게 획득하였는가를 알지 못한다" [66] 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는 칸트의 因果律에 대한 原則으로부터 특수한 因果法則을 도출할 수는 없다. 칸트가 지적한 대로, "특수한 法則을 배워서 알기 위해서는 經驗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67]

칸트는 因果性의 原則을 통해서, 原則은 경험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어서 經驗의 對象에 妥當하며, 客觀的 實在性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原則 자체가 經驗의 可能性의 條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방식은 칸트철학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즉 循環論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純粹理性批判」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이러한 비난에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즉 칸트의 批判的 方法이 바로 實驗的 方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의문은 풀릴 수 있다.

칸트의 批判的 方法 즉 先驗哲學的 方法은 經驗에 앞서서 經驗을 가능하게 하는 制約을 究明하고, 이 制約이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까닭을 논의하는 것이다. 칸트의 이론이성에서는 時間, 空間 및 카테고리와 더불어 原則이 이러한 근본적인 制約으로 작용한다. 즉 "先天的 槪念은 결코 그것만

66) *Ibid.*, SS. 203~4.
67) I.Kant ; K.d.r.V., S.B. 165.

으로는 생길 수 없고, 언제나 經驗一般의 形式的이고 客觀的인 制約으로만 생길 수 있는 것이다."[68] 이러한 批判的 方法이 다름아닌 實驗的 方法이라고 칸트는 말한다.[69]

칸트는 數學이나 自然科學이 확실한 學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思考法의 革命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範例에 따라서 그러한 사고법을 哲學에 도입함으로써 形而上學의 전면적인 혁명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는 "우리가 事物에 대해 先天的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다만 스스로 事物 속에 投入한 것 뿐이다."[70] 이와같은 사고법의 혁명은 범주의 연역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原則論에서도 "우리가 先天的인 純粹 表象을 명석한 槪念으로서 經驗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미리 경험 속에 投入함으로써 비로소 경험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71] 고 밝히고 있다.

칸트가 철학의 방법적인 범례로 간주했던 數學(幾何學)과 物理學은 오늘날 形式科學으로서의 公理體系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가 「純粹理性批判」을 통해 公理論的 體系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칸트의 批判的 方法은 實驗的 方法이며, 이는 公理論的 方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마르틴(G. Martin)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 "우리는 原則이 칸트에 의해서 가능한 經驗의 原則으로 간주되어 있고, 그와같은 原則으로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오늘날의 公理論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公理體系는 어떤 命題體系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公理體系의 증명은 그 體系가 의거한 그 命題體系의 公理體系로서 증명이 된다는 의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原則도

68) *Ibid.*, S.B. 270~1.
69) *Ibid.*, S.B. XII.
70) *Ibid.*, S.B. XVIII~XIX.
71) *Ibid.*, S.B. 241.

可能한 經驗의 原則으로서 간주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原則은 古典 物理學의 公理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다."[72]

우리가 이러한 마르틴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면, 범주의 연역에서와 같이 原則論에서 행한 칸트의 論證이 循環的이라는 批判은 그의 實驗的이며 公理論的인 方法이 지니는 思考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72) G. Martin; Immanuel Kant-Ontologie und Wissenschaftstheorie(Köln : Balduin Pick, 1960), S. 94.